

「공진초 이적지, 마곡지구 대체부지 확보 검토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청원번호 : 63번
2. 청 원 자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137,
김남연(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대표) 외 1,192명
3. 소개의원 : 우창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도시계획관리위원회)
4. 접수일자 : 2017년 2월 9일
5. 회부일자 : 2017년 2월 13일

II. 청원요지

- 2017.1.9.일자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강서지역 특수학교 신설용지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변경요청’ 공문을 서울시에 보내어 공진초 이적지, 마곡지구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을 하였으나, 특수학교 부지가 마곡지구로 대체될 경우, 면적이 4,700㎡로 특수학교부지로서 작고 도시계획시설변경에만 약 2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어 마곡지구 대체부지 확보에 대한 검토를 중단해 줄 것을 청원함.

III. 소개의원 청원 소개 요지

- 현재 공진초 이적지 대체부지로 거론되는 마곡대체용지는 서울식물원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서울식물원 부지주변에 특수학교를 신설할 경우 서울식물원 설립 목적인 제 모습과 제 기능을 갖출 수 없고,
- 만약 특수학교가 공진초 원안의 후보지에서 주민 님비(NIMBY)로 인해 제2후보지로 옮길 경우, 주민 님비는 더욱 더 거세지어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적어짐.

또한 마곡지구 대체부지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에만 약 2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어 강서지역 특수학교 개교목표일인 2019년 3월에는 개교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IV.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법률 제14197호, 2016. 5. 29,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882호, 2016. 1. 12, 일부개정)
- 청원법(법률 제12922호, 2014. 12. 30, 일부개정)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청원경위 및 주요내용

- 「공진초 이적지, 마곡지구 대체부지 확보 검토중단 요청」 청원은 2017년 2월 9일 우창윤 의원의 소개로 김남연 외 1,192명으로부터 청원번호 제63번으로 제출되어 2017년 2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청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당초 공진초 이적지에 설립예정이었던 특수학교를 마곡지구의 서울식물원으로 옮기고자 서울시에 마곡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청한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별도의 특수학교 대체부지 검토를 중단하고 본래 특수학교 설립 예정지였던 공진초 이적지에 특수학교를 설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청원의 취지에 대한 검토

-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11월에 ‘특수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공립 특수학교 신설계획’을 수립하고, 공진초가 마곡지구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이적지(강서구 가양동 1477번지)에 2016년 3월까지 특수학교(가칭 ‘서진학교’)를 설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진초 이적지는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고, 가양동에 장애인 시설(재활시설, 체육시설)이 밀집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들이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여 특수학교 설립이 계속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시가지 및 주거지역과 떨어져 있고 인근 마곡 업무지구 입주기업들과 장애인 고용 및 재활활동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서울식물원 내 대체용지를 검토하였고,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¹⁾.([붙임-1]참조).

그러나 마곡 지구 내 대체부지 검토 및 용지 변경은 결과적으로 특수학교 설립을 지연시키고, 지적장애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불편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수학교 설립 부지 변경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나. 마곡지구 대체부지에 대한 검토

-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교 설립 이전 부지로 검토 중인 마곡지구 내 대체부지는 강서구 마곡도시개발구역 내에 위치한 곳으로, 현재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18년 5월 개원을 목표로 서울식물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1)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712(2017.1.19.)

○ 동 마곡지구 대체부지는 기존의 공진초 이적지에 비해 ① 주택단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²⁾, ② 공원용지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향후 공원용지를 활용한 특수학교 설립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먼저 시기 면에서 대체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에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학교설립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서울식물원 개발계획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른 학교 설립이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붙임-2]참조).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공진초 이적지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예고를 종료한 시점에서 해당 지역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특수학교의 설립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마곡지구 대체부지는 학교설립 면적이 4,700㎡로써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따른 교지면적기준 5,200㎡³⁾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마곡지구 녹지율 확보를 위해 향후 특수학교 부지 면적을 조정해야 하는 등⁴⁾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공진초 이적지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외에도 마곡지구 대체부지가 공진초 이적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근 주택단지와 떨어져 있다고는 하나 주민들의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반대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특수학교 설립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교육청의 특수학교 대체부지 마련 방향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1] 공진초 이적지 특수학교 신설(안) 행정예고 제출의견 현황

(행정예고 기간 : 2016.8.31.~9.30, 단위 : 건)

구분	제출 유형		찬성	반대	비고
	개인	단체			
제출의견	26,067	1	10,643(40.8%)	15,425(59.2%)	

2) 공진초 이적지의 경우 인근 아파트 단지와의 거리가 30m에 불과한 반면, 서울식물원 내 마곡지구 대체용지는 인근 아파트 단지로부터 700m 이상 이격되어 있음.

3)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교지)

② 교지의 기준면적은 학급(「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순회교육을 위한 순회학급은 제외한다)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으로 한다.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에 두는 시설·설비 및 유원장(幼稚園場)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으로 한다.

1. 12학급 이하: 4천제곱미터

2. 12학급 초과 24학급 이하: 4천제곱미터 + (12학급을 초과하는 학급 수 × 3백제곱미터)

3. 24학급 초과: 7천6백제곱미터 + (24학급을 초과하는 학급 수 × 2백제곱미터)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교지의 기준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축할 수 있다.

4) '강서지역 특수학교 신설용지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요청 회신', 서울특별시 서남권사업과-1255(2017.2.6.)

[표-2] 학교설립시 추진 절차 및 일정5)

- 공진초 이적지

진행완료				진행예정									
2016				2017					2018			2019	
8월	9월	10월	12월	2월	3월	4월	5월~6월	7월~12월	1월	1월~3월	3월~12월	1월~2월	3월
행정 예고	행정 예고 의견 수렴	자체투자 심사 자체공유재 산심의	중앙투자심사 시의회공유 재산심의	(1개월)	(1.5개월)	(1개월)	(2개월)	(6개월)	(0.5개월)	(2개월)	(11.3개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검토	설계공모 준비 (MP선임)	설계공모 공고	작품 접수 및 평가	설계 (위원회)	일상감사	공사입찰	공사	개교	

- 마곡지구 대체부지

2017						2018		2019	2020	
2월	3월	4월	5월	7월	10월	1월	2월~12월	1월~12월	1월~2월	3월
부지확정 설립계획변경	사전 협의 (도시공원위원회)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SH)		실시계획변경인가 (위원회)		설계 및 공사 (공진초 이적지 학교설립 추진일정 동일: 20개월)			개교
	공유재산심의		투자심사 (자체, 중앙)							

- 한편 당초 교육청이 특수학교 예정부지로 행정예고한 공진초 이적지는 ①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별도의 예산이 발생하지 않고, ②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 없어 당초 계획된 2019년 3월까지 개교가 가능하여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③ 인근에 늘푸름나무복지관, 기쁜우리 복지관 및 기쁜우리체육센터, 구립강서직업재활센터 등 장애인 체육시설 및 재활시설이 위치해 있어 지적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다만 동 공진초 이적지의 경우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워 개교시기가 또 다시 지연될 수 있다는 한계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3] 공진초 이적지 특수학교(가칭)서진학교) 설립계획

(단위 : m², 명, 억원)

학교명 (가칭)	위치	장애 영역	설립계획			면적		사업비 (건축비)
			개교시기	학급수	학생수	부지	건축	
서진 학교	강서구 가양동 1477 (공진초 이적지)	지적 장애	2019.3.	16	106	5,000 (총 11,002)	7,805	138.4

5)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765(2017.2.20.)



<공진초 이적지와 마곡 대체부지 거리>

□ 이상으로「공진초 이적지, 마곡지구 대체부지 확보검토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1] 강서지역 특수학교 가칭)서진학교 설립 진행 경과

일 자	내 용
2013. 8.13.	서울 특수교육 현안과제 및 대책 수립(학교생활교육과) - (내 용) 동부 및 강서(추가) 지역 특수학교 설립
2013.10.30	특수학교 신설추진 세부시설조성 협의(학교생활교육과) - (내 용) 동부 및 강서 특수학교 세부시설, 필요교실, 소요액 등 최종협의 완료
2013.11. 8.	특수학교 신설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의뢰
2013.11.14	자체 재정투자 심사 통과
2013.11.25. ~12.19	행정예고 시행(25일간, 총 참여인원 13,345명) - (내 용) 참여인원 7,755명 (찬성 6,548명, 반대 및 도서관 요구 1,207명)
2013.12. 4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삭제 및 보류(교육위원회)
2013.12. 6	2014년도 본예산 설계비 10억원 삭감(교육위원회)
2014. 1.14	재정투자심사 우선 유보 요청 - (내 용) 공립 특수학교 신설 사업에 대한 사회적인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의 반대(장애)요인을 저감하여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정투자심사를 유보 요청
2014. 2. 5	공립 특수학교 신설계획 재검토 결정(교육청)
2014. 8.21.	공립 특수학교 신설계획 추진(안) 재수립 (교육청) - (내 용) 공진초 이적지 내 도서관 설치 병행 결정
2014. 10.	공진초 인접 LG자이(790세대) 주민 반대의견 제출 - (내 용) 반대 의견 제출 1,444명
2015. 5.~6.	강서 및 동부지역 지역 주민설명회 추진 무산 - (무산사유) 메르스 발병에 따라 모든 집회 연기 및 취소 사태 발생
2015. 8.	공진초 이적지 활용방안 임대 요청 (강서경찰서→강서교육지원청) - (내 용) 강서경찰서 청사 신축으로 2년 6개월간 사용 요청 (연/1,200,000천원의 사용료 수익 예상)
2015. 9.30	강서구 마곡지구 내 부지 확보 검토 요청(교육청→ SH공사, 서울시) - (SH 유선 회신) 마곡지구 기 분양자 반발을 우려하여, 사전협의 요구 - (서울시 회신) 해당 부지의 농업역사박물관 조성규모 미확정으로 분할가능여부 판단 불가 회신
2015.11.27.	SH-교육청 특수학교 설립 추진 협의 - (내 용) 마곡지구 내 부지확보 요청 - (SH공사) 계획에 없던 내용으로 입주(예정)주민 반대에 따라 부지 제공 어려움, 주민동의를 전제로 긍정적 검토 가능하나, 다방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입주민협의체의 반대 민원우려로 부지 제공 어려움
2016. 1.26.	SH-교육청 특수학교 설립 추진 협의 - (내 용) 인사이동에 따른 추진 경과 설명 및 마곡지구 내 부지확보 요청 - (SH공사) 해당 부지(편익용지,S5)는 서울시에서 공원화(농업박물관)를 예정하고 있으며 인접하여 초고압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학교용지로 적합하지 않음
2016. 2. 5.	마곡지구 내 부지 확보 재검토 요청(교육청→ 서울시) - (2.16. 서울시 회신) 기 회신한 답변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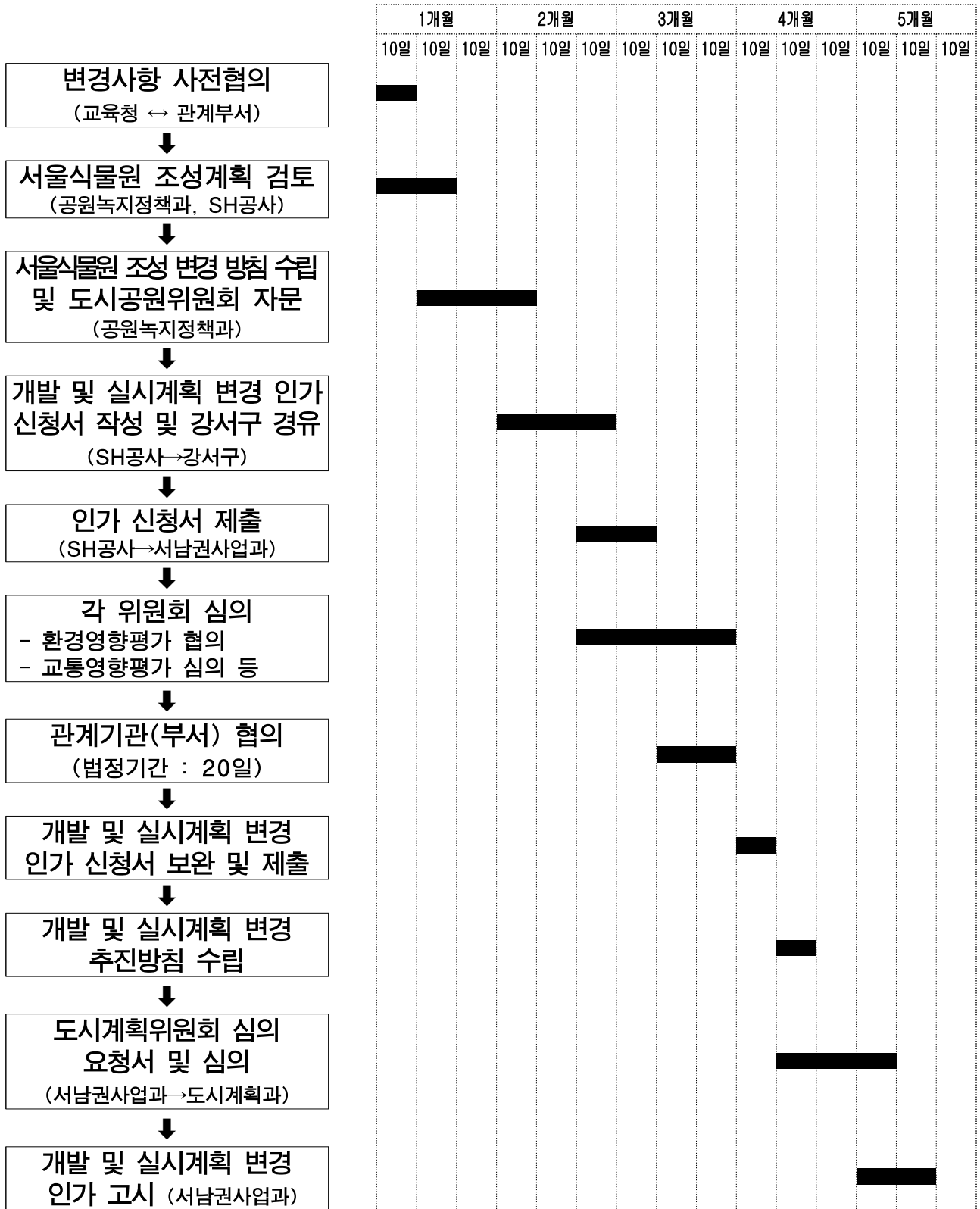
2016. 3. 16.	<p>서울시-교육청 마곡지구 내 부지 확보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 마곡지구 내 부지확보 요청 - (마곡조성과) 해당 부지는 도시농업과에서 사업을 추진중이며,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서 분할 여부 판단 불가능
2016. 3. 17.	<p>공진초 이적지 활용방안 임대 재요청 (한정애 국회의원실,강서경찰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용) 강서경찰서 청사 신축으로 2년 6개월간 사용 요청 (연/1,200,000천원의 사용료 수익 예상)
2016. 4. 14	<p>서울시-교육청 마곡지구 내 부지 확보 협의 (마곡추진단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 마곡지구 내 부지확보 요청 - (마곡추진단장, 마곡조성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용지 인근에 국내 최대 식물원이 입지 예정으로 국내·외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전체 공원의 기능 및 효용성 등을 감안할 때 특수학교 입지로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함 2. 또한 서울시 농업조성과 및 강서구청에서 해당 용지 전체를 농업박물관 [도시농업체험시설] 추진을 위한 용역을 준비중임 3. 인근 우수지를 40%정도 복개하여 주차장, 주민체육시설 등으로 활용 예정임 4. 강서구 방화대교 남단 인근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이전 예정임
2016. 4. 18	<p>강서구청-교육청 마곡지구 내 부지 확보 협의 (기획재정국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 마곡지구 내 부지확보 요청 - (기획재정국장, 일자리경제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반기에 마곡지구 내 도시농업박물관 및 테마파크 관련 사업을 조성 위한 용역 발주 예정임 ('17년 착공 목표) 2. 서울시 도시농업과에서 내부적으로 기본 계획을 세워 예산을 교부하였으므로 강서구청에서 부지 제공 및 분할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움
2016. 4. 20.	<p>서울시-교육청 마곡지구 내 부지 확보 협의 (경제진흥본부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 마곡지구 내 부지확보 요청 - (경제진흥본부장, 도시농업과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곡지구는 700여년 농경 문화의 역사적 가치를 함유하고 있어 중앙공원과 연계할 수 있는 현 부지로 선정하였음 2. 또한 양천향교, 허준박물관 등과 연계한 테마파크 및 농업박물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편익용지 토지 전체를 사용할 예정으로 토지 분할은 어려움
2016. 4. 20.	<p>마곡지구 내 부지 확보 협의 (국회의원 김성태 의원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 마곡지구 내 부지확보 불가시 공진초이적지 특수학교 설립 예정 - (김성태의원실 비서관) 보건복지부 2016년 본예산에 타당성조사 등을 위한 용역비를 반영해 둔 상태로 공진초이적지는 국립한방의료원 설립을 염두해 두고 있음
2016. 4. 29	<p>강서구 내 특수학교 설립 관련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 마곡지구 내 부지확보 불가시 공진초이적지 특수학교 설립 예정 - (김성태 의원) 대체부지를 확보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음
2016. 7. 28	<p>강서구 내 특수학교 설립 관련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 지역적 특색(한방)과 특수학교 공존 방안 설명 - (김성태 의원) 공진초 이적지에 국립한방의료원 설립 당위성 설명, 마곡지구내 편익용지가 특수학교 부지로 타당
2016. 8. 5.	<p>강서구 내 특수학교 설립 관련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 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마곡지구는 농업역사박물관 조성계획이 이미 정해져 있으며 공간이 부족함, 정보화진흥원 부지 내 어울림플라자 용역 중으로 병행하는 방안은 검토 가능 - (김성태 의원) 공진초 이적지는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함, 공진초 이적지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국립한방의료원 설립과 한방산업 특화지역 조성이 필요함, 마곡 지구내 농업역사박물관 조성 부지 중 일부를 특수학교 부지로 할애 요청
2016. 8. 11	공립 특수학교 신설 추진계획(안) 수립 : 공진초 이적지 내 신설
2016. 8. 31 ~ 9. 19.	행정예고 실시
2016. 8. 31 ~ 9. 30	행정예고 변경(공고기간 연장)
2016. 9. 26	교육감·강서지역 주민대표 면담 실시
2016.10.14	서울시 도시농업과에서 마곡지구 학교용지 제공 의사 - 마곡지구 편익용지 3,700㎡ 분할 가능
2016.10.18.	마곡지구 특수학교용지 관련 협의(김성태 국회의원, 교육감님) - (김성태의원) 마곡지구 농업박물관 용지를 일부 분할하기로 했으니 검토 바람 - (교육청) 현재 공진초 이적지에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임. 마곡지구 용지는 변전소와 주유소 문제로 안전 및 학부모 반발이 예상되며 형태·위치가 학교용지로는 부적합함
2016.10.18	서울시 도시농업과에서 마곡지구 학교용지 추가제공 의사 - 마곡지구 편익용지 4,300㎡ 분할 가능
2016.10.20.	가칭) 서진학교 설립계획 자체공유재산 심의 통과(교육청)
2016.10.21.	가칭) 서진학교 설립계획 자체투자심사 통과(교육청)
2016.11.21	마곡지구 학교용지 관련 시의원 및 도시농업과 협의 - (서울시 도시농업과) 출입구 문제만 해결되면 교육청에서 원하는 대로 편익용지의 분할에 최대한 협조해 줄 것임 - (교육청) 마곡지구 편익용지는 변전소·주유소가 접해 있어 2017년 2월부터 시행되는 교육환경보호법에 의해 학교신설이 불가능한 입지임
2016.11.29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반대 주민시위 - 일시 / 장소 : 2016.11. 29.(화) 11:00~14:00, 본청 정문앞 - 참석자 : 강서지역 비대위 위원 및 주민 70여명
2016.12. 5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시의회 공유재산 심의 통과
2016.12.14.~ 2017.1.18	서진학교 대체부지 관련 협의 -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관계기관, 장애인학부모단체,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반대추진 비대위 및 주민 등
2017. 1.19.	대체부지 확보 도시계획 변경 요청 (교육청→서울시)

[붙임-2] 마곡지구 대체부지 학교용지 변경절차 및 소요기간⁷⁾

[흐름도]

[소요기간] 예상



7) 서울특별시 서남권사업과-1674(2017.2.16.)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제73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4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75조(청원의 심사·처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6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6882호, 2016.1.12., 일부개정]

제60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시행 2010.1.7.] [서울특별시규칙 제17호, 2010.1.7., 일부개정]

제6조(청원의 심사·처리)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0조(심사보고)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보고한다.

1.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청원
2. 교육감이 처리하여야 할 청원
3. 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청원